<첨 부> 조사표 양식

석면 잔재물 조사표

학교명	북일고등학교	대표자	한 상 홍	전화번호	041-520-8604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해체제거 면적	▣ 800㎡이상 □ 800㎡미만

❑ 석면 의심물질(잔재물) 육안조사 점검현황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1개동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본관동 1층		□ 有 ☑ 無			관리실 3실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의심 물질(잔재물) 시료채취 정보

연 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확인결과 (개선여부 등 의견)	

20 20. 07. 10.

조사자
(모니터단
구성원)

(소속) ㈜세종이엔에스 직급 : 감리원 성명 : 최 호 진 (서명)
(소속) 선문대학교석면환경센터 직급 : 센터장 성명 : 김 태 오 (서명)
(소속)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직급 : 간사 성명 : 이 상 은 (서명)
(소속) 북일고등학교 직급 : 학부모 성명 : (서명)
(소속) 북일고등학교 직급 : 학부모 성명 : (서명)
(소속) 북일고등학교 직급 : 행정실 성명 : 권 태 익 (서명)

『북일고등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상　　호 : 대한환경연구소 주식회사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9, 512호(보람동, 엔젤타워)
전 화 번 호 : 044)866-8722　　팩　　스 : 044)866-8723
전 자 우 편 : keri55154@naver.com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7. 10. 17.>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작업명) 북일고등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현장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제3639호	업자명(상호) 에스엠이엔지(주)
	전화번호 041 523 2330	대표자 오 승 민

2. 측정기간 - 2020년 02월 09일(1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김 원 국	대기환경산업기사	16202132251H	측 정 자
정 재 명	대기환경산업기사	94206130781K	분 석 자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첨부1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첨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02월 09일

석면측정기관 대한환경연구소(주)

에스엠이엔지(주)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측정결과

측 정 장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측 정 면 적 (밀폐면적)	144㎡
측 정 위 치	본관 관리실외
측 정 개 소 (POINT)	6개소
측 정 일 시	2020년 02월 09일 14:30~16:00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P1	100	10.60	0.000	노출기준미만
P2	100	10.50	0.000	노출기준미만
P3	100	10.50	0.000	노출기준미만
P4	100	10.50	0.000	노출기준미만
P5	100	10.50	0.000	노출기준미만
P6	100	10.60	0.000	노출기준미만

측정 위치도(측정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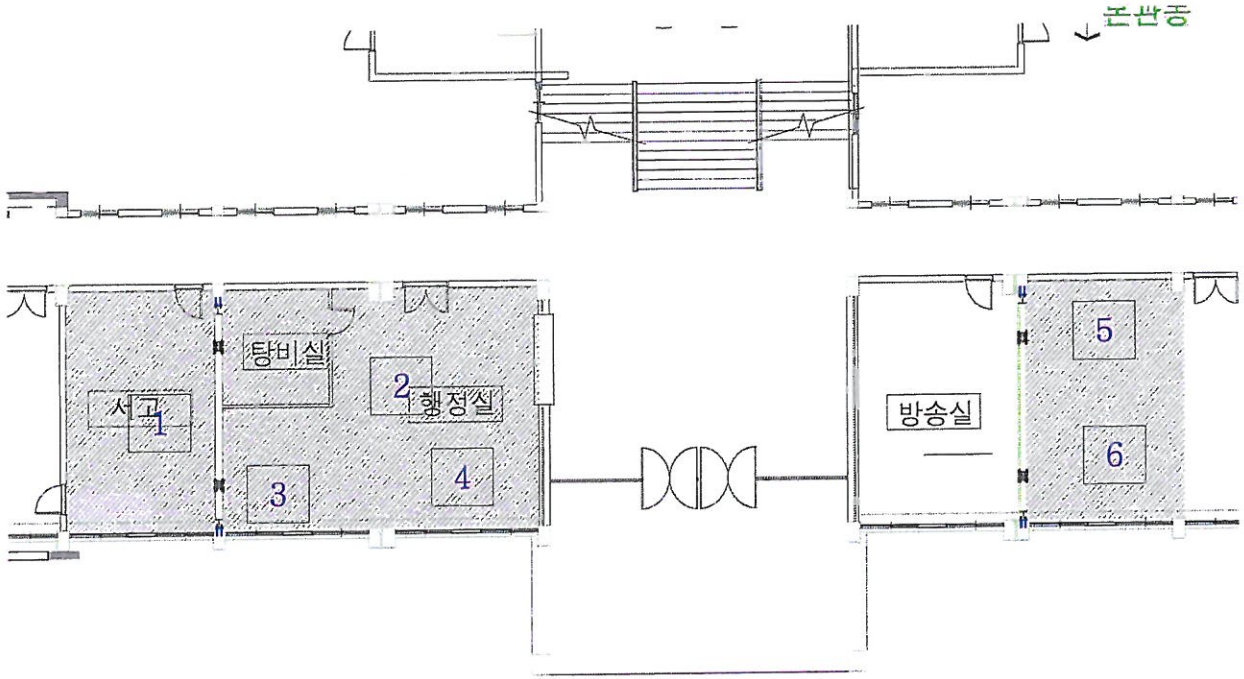

사진대지(02월09일)

측정지점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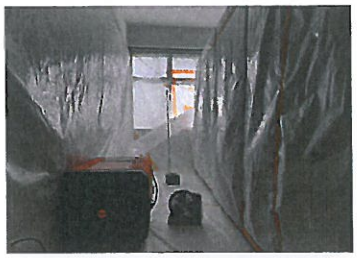	측정지점 P2	
측정지점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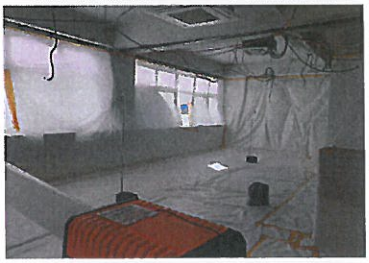	측정지점 P4	
측정지점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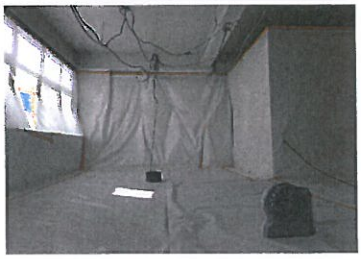	측정지점 P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제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예: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제11조(분석)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법(NMAM7402), 영국보건안전청(HSE) 공정시험법(MDHS 87)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분석법에 따라 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